

예산총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15,000,000	6,450,000
일반회계	198,000,000	5,940,000
특별회계	17,000,000	510,000
기타특별회계	17,000,000	510,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550,000	166,500
수질개선특별회계	3,530,000	105,900
의료급여특별회계	559,000	16,77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100,000	33,000
농업육성기금특별회계	1,416,000	42,480
치수사업특별회계	1,250,000	37,5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000	45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00,000	105,00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0,000	2,4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 이월은 별첨 "계속비사업 이월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77,4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